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성북구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 북 구
(청소행정과)

성북구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75
------------	-----

제출년월 : 2024년 4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성북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기에 앞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양질의 재활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설명 : 성북구 재활용센터
- 위치 : 성북구 화랑로 146 (상월곡동, 성북구 새활용센터)
- 규모 : 새활용센터 내 1~3층

토지			건물			
지목	면적	소유	구조	층	연면적	용도
잡종지 등	671m ²	구유지	철근 콘크리트	1층	65.54 m ²	공용면적, 주차장
				2층	343.36 m ²	공용면적, 재사용매장
				3층	336.27 m ²	공용면적, 재사용매장
				1층	24.18 m ²	휴게공간, 공용면적, 주차장
				4층	337.66 m ²	공용면적, 사무실, 교육장
				옥탑		태양광 설비, 녹지공간

- 나. 위탁기간 : 3년(새활용센터 준공 후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 다. 선정방법 : 공개 모집 후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 라. 수탁자격: 아래자격을 모두 충족하는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공고일 현재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시 소재인 자
 - 재활용사업(가전 · 가구수리, 판매 등) 경험이 3년 이상인 법인과 단체(개인)
- 마. 위탁사업의 범위
- 재활용 판매품 수거, 전시 및 판매, 사후 서비스, 잔재물 처리
 - 취약계층 지원 및 재활용 홍보 등
 - 1층~3층 시설물 사용 관리
 - 수리소 운영
- 바. 위탁비용 : 수익을 동반하는 시설로 구 예산지원 없음
- 사. 사용료 부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한 토지 및 건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의 연간 사용료 부과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